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판매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 각종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2001. 1. 16. 개정)과 동 시행령(2001. 3. 27. 개정), 하도급법, 약관법(2001. 3. 20. 개정), 표시광고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 및 관계법령과 해당 심결사례를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30,000원(비회원사 40,000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775-8870~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목차 안내

I. 公正去來法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2001. 1. 16. 개정>및시행령<2001. 3. 27. 개정>
2. 告示·指針 등
 - 1) 市場支配의地位濫用行爲의審査基準<2000. 9. 8. 제정>
 - 2) 企業結合의申告要領
 - 3) 企業結合審査基準
 - 4) 持株會社關聯規程에關한解釋指針<2001. 5. 2. 개정>
 - 5) 持株會社의設立·轉換의申告및持株會社의株式所有現況등의報告에關한要領<2001. 5. 개정>
 - 6) 企業結合申告規定違反事件에대한過怠料賦課基準
 - 7) 企業結合關聯是正措置不履行에따른履行強制金賦課基準<2000. 12. 23. 제정>
 - 8) 共同行爲및競争制限行爲의認可申請要領
 - 9) 入札秩序公正化에關한指針
 - 10) 事業者團體活動指針
 - 11) 大規模小賣店業에있어서特定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및基準指定告示
 - 12) 景品類提供에關한不公正去來行爲類型및基準<2000. 4. 25. 개정>
 - 13) 並行輸入에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告示
 - 1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不公正去來行爲의基準指定告示
 - 15) 大規模企業集團의不公正去來行爲에대한審査基準

- 16) 不當한支援行爲의審査指針
- 17) 大規模內部去來에대한理事會議決및公示에관한規程<2000. 4. 1. 제정>
- 18) 國際契約上的의不公正去來行爲등의類型및基準
- 19) 國際契約審査要請要領
- 20) 公正去來委員會會議運營및事件節次등에관한規則<2000. 12. 5. 개정>
- 21) 法違反事實의公表에관한運營指針<2000. 6. 13. 개정>
-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등에의한利害關係人등에대한經費支給規程
- 23) 過徵金賦課細部基準등에관한告示
- 24) 滯納過徵金에대한加算金料率告示
- 2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違反行爲의告發에관한公正去來委員會의指針
- 26) 公正去來委員會訴訟事件受任辯護士報酬規程
- 27) 還給過徵金에대한加算金料率告示<2001. 3. 27. 제정>
- 28) 知的財産權의不當한行使에대한指針<2000. 8. 30. 제정>

II. 下都給法

1.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示<2000. 5. 23. 개정>
 - 2) 製造委託의對象이되는物品의範圍告示
 - 3) 先給金등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告示
 - 4)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告示<2000. 10. 13. 개정>
 - 5)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2000. 3. 29. 개정>
 - 6) 下都給法違反事業者에대한過徵金賦課指針

III. 約款規制法

1.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IV. 表示·廣告法

1.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不當한表示·廣告行爲의類型및基準指定告示
- 2) 注油所등石油販賣業에있어서의供給者表示에관한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및基準
- 3) 住宅의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4) 環境關聯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5) 商街등의分讓및賃貸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6) 銀行등의金融商品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7) 保險商品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8) 受賞·認證등의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9) 通信販賣表示·廣告에관한審査指針
- 10) 廣告實證에관한運營指針<2000. 12. 22. 개정>
- 11) 臨時中止命令에관한運營指針
- 12) 重要한表示·廣告事項告示<2001. 5. 2. 개정>
- 13)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2000. 1. 6. 제정>
- 14) 訂正廣告에관한運營指針<2000. 12. 22. 제정>
- 15) 消費者被害一括救濟에관한運營指針<2001. 3. 31. 제정>

V.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적용 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VI.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 割賦去來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I. 公正去來委員會運營

1. 公正去來委員會職制<2000. 2. 28. 개정>
2. 公正去來委員會職制施行規則<2000. 5. 19. 개정>
3. 公正去來委員會委任專決規程<2000. 11. 15. 개정>
4. 地方事務所業務處理指針
5. 公正去來委員會所屬公務員人事管理規程

LG건설(주)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전담팀 신설

LG건설(주)(대표 : 민수기 부회장)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및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비용부담과 경쟁법(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위반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 8월 1일,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문화팀」(Fair Trade Promotion Team)을 신설하였다.

LG건설(주) 공정문화팀은 4명으로 구성(팀장 김효수 차장)되어 있으며, 지난 '96년부터 운영해 온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재설계하고, 업무분야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Manual 발간 및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진단, 평가 Program을 구축하여 업무수행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Risk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LG건설(주)는 초우량 기업을 지향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어음거래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 대금결제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자재 납품 대금 등 어음발행을 전면 폐지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규정에 의한 현금결제 비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뿐만 아니라, 시공참여자에 대한 노임 체불 예방 및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의 수령(어음)조건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고, 원·하도급 업체간 동반자적인 Partnership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 및 하자 이행 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